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데이터처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데이터처에 데이터 연계·활용 및 분석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국가데이터관리본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가데이터관리본부 2개 과의 정원을 12명으로 변경하고,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처로의 승격에 따른 소속기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소속기관인 통계인재개발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지방통계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지방통계지청의 명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데이터처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가통계연구원의 명칭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 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가데이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통계청을 두고, 지방통계청장 소속으로 지방통계지청”을 “지방데이터청을 두고, 지방데이터청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지방통계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통계데이터”를 “데이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7조 중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통계분야”를 “통계·데이터분야”로, “통계이용자”를 “통계·데이터이용자”로, “통계에”를 “통계·데이터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9조 중 “통계인재개발원”을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통계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

법개발”을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데이터 과학 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통계연구원”을 각각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방통계관서”를 “지방데이터관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통계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행정”을 “통계·데이터 관련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통계지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지방통계청장”을 “지방데이터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통계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통계지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지방통계청장)”을 “(지방데이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통계청”을 “지방데이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경인지방통계청장, 동북지방통계청장 및 호남지방통계청장”을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장”으로, “동남지방통계청장”을 “동남지방데이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충청지방통계청장”을 각각 “충청지방데이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통계청장”을 “지방데이터청장”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지방통계지청장 등)”을 “(지방데이터지청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통계지청”을 “지방데이터지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통계지청장”을 “지방데이터지청장”으로 한

다.

제26조 중 “지방통계청과 지방통계지청”을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국가통계연구원”을 “국가데이터연구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계 “699”를 “704”로 하고, 일반직 계 “698”을 “70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86”을 “691”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정원란 중 “8명”을 “12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데이터청의 명칭 및 위치(제23조제1항 관련)

명 칭	위 치
경인지방데이터청	경 기 도
동북지방데이터청	대구광역시
호남지방데이터청	광주광역시
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광역시
충청지방데이터청	대전광역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데이터처 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하 에 <u>통계인재개발원</u> 을 둔다.	제2조(소속기관) ① ----- ----- ----- -- <u>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u> ----.
② 국가데이터처장의 소관 사무 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 처장 소속으로 <u>지방통계청을 두</u> <u>고, 지방통계청장 소속으로 지</u> <u>방통계지청</u> 및 사무소를 둔다.	② ----- ----- ----- <u>지방데이터청을</u> <u>두고, 지방데이터청장 소속으로</u> <u>지방데이터지청</u> -----.
③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 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 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가데이 터처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 로 <u>국가통계연구원</u> 을 둔다.	③ ----- ----- ----- ----- ----- ----- ----- -- <u>국가데이터연구원</u> ----.
제14조(조사관리국) ① (생 략)	제14조(조사관리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
1. <u>지방통계청</u> 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 <u>지방데이터청</u> ----- -----
2. ~ 16.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① .
 ② (생략)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정부 통계데이터 총괄·조정
 2. ~ 16. (생략)

제3장 통계인재개발원

제17조(직무) 통계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제18조(원장) ① 통계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데이터 -----
 --
 2. ~ 16. (현행과 같음)

제3장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제17조(직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통계·데이터분야 -----

 ----- 통계·데이터이용자
 ----- 통계·데이터에 --

 -----.

제18조(원장)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하부조직) -----

통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통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통계연구원

제20조(직무) 국가통계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략)

<신설>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가통계연구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통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국가데이터연구원

-----.

제4장 국가데이터연구원

제20조(직무)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데이터과학 연구-----.

1. ~ 8. (현행과 같음)

9.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가데이터연구원-----

-----.

② -----

----- 국가데이터연구원-----

통합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
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
다.

제5장 지방통계관서

제22조(직무) ① 지방통계청은 지
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
의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
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통계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
장한다.

제23조(명칭 등) ① 지방통계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

②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총리
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통계청장) ① 지방통
계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경인지방통계청장, 동북지방

--.

제5장 지방데이터관서

제22조(직무) ① 지방데이터청---

-- 통계·데이터 관련 행정---
-----.

② 지방데이터지청 -----
지방데이터청장-----
-----.

제23조(명칭 등) ① 지방데이터청

--.

② 지방데이터지청 -----

-----.

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① 지방
데이터청-----.

②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

통계청장 및 호남지방통계청장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
통계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통계청장은 4
 급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
통계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
 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
 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통계청장은 국가데이터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제25조(지방통계지청장 등) ① 지
방통계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
 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4급으로,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
 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운영
 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
터청장-----

----- 동남지방

데이터청장-----

----- 충청지방데이터청장---

----- . ----- 충청지방

데이터청장-----

-----.

③ 지방데이터청장-----

-----.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①

지방데이터지청-----

-----.

② 지방데이터지청장-----

-----.

---.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u>지방통계청과 지방통계지청</u>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u>국가통계연구원</u>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u>국가통계연구원</u>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6조(하부조직) ----- ----- ----- -- <u>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u>----- ----- -<u>국가데이터연구원</u>----- ----- -----.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u>국가데이터연구원</u>-----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99</u>	<u>704</u>	+5
·	·	·	
·	·	·	
일반직 계	<u>698</u>	<u>703</u>	+5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86</u>	<u>691</u>	+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502